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 회)	

기 상 청 과 그 소 속 기 관 직 제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(행정안전부 소관)
제출 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기상청에 기상·지진장비 인증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(7급 1명), 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총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(5급 1명),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(5급 1명),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생산 및 활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(6급 1명) 및 해양기후 3개월 전망 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(6급 1명)을 각각 증원하고, 기상청 소속기관인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 기후업무 담당자 교육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(7급 1명)을 증원하는 한편,

「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」에 맞추어 기상청 기후과학국장의 분장사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기상청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1. 31. ~ 2. 5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총괄

제27조의2제1항 전단 중 “제4조의2제2항제3호”를 “제4조의2제2항제5호”로 한다.

별표 2 중 총계 “426”을 “431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425”를 “430”으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413”을 “418”로 한다.

별표 3 중 총계 “688”을 “689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688”을 “689”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672”를 “673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경부령으로 정한다.

②·③ (생략)
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[별표 2]

기상청 공무원 정원표(제25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 정 안	증 감
총 계	<u>426</u>	<u>431</u>	+5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<u>425</u>	<u>430</u>	+5
·	·	·	
3급 또는 4급 이하	<u>413</u>	<u>418</u>	+5
·	·	·	
·	·	·	

[별표 3]

기상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(제26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688</u>	<u>689</u>	+1
일반직 계	<u>688</u>	<u>689</u>	+1
·	·	·	
·	·	·	
3급 또는 4급 이하	<u>672</u>	<u>673</u>	+1
·	·	·	
·	·	·	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90